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사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20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	3
1. 제정안의 배경 및 주요내용	3
2. 제정안 심사 시 고려 사항	10
IV.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제1장 총칙	12
2. 제2장 수산사료 산업의 기반조성 등	19
3. 제3장 수산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등	24
4. 제4장 수산사료의 검사 등	37
5.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	49
[참고자료]	56

I. 제안경위

1.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안일: 2025. 5. 28.
3. 회부일: 2025. 5.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료관리법은 동물 사료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동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산사료의 특수성 반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수산사료로 사용되는 단미사료의 경우 수산사료 검정의 전문성 문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는 등 축산동물용 사료와 차별화된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사료관리법 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현실임.

이와 함께 수산자원 고갈 등 수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사료 산업의 육성과 제조·판매·수입 과정의 안전성 확보 등 수산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사료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

립, 수산사료 실태조사의 시행, 수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을 도모하고 수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수산사료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

□ 세계 수산사료¹⁾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90억 달러(약 137조 원)에서 2025년에 1,071억 달러(약 148조원), 2029년에는 1,499억 달러(약 2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8.8%로 예상됨.²⁾

수산사료 시장의 성장은 양식 산업의 확장 및 수산물 소비 증가, 안전성과 품질 보장 요구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으며, 가장 큰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지역은 북미로 분석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수산사료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12억 달러(약 1.6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17억 달러(약 2.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³⁾

1) 수산사료(aquafeed)란 양식장에서 기르는 수산동물이 성장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먹이로서, 크게 생사료(raw feed)와 배합사료(compound feed)로 구분되며,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포함되어 동 법에 따른 규율 대상이 되고 있음. 수산사료의 종류 및 수산용 배합사료 현황 등은 [참고 1] 참조

2) The Business Research Company, "Aquafeed Global Market Report 2025 - Market Size, Trends, And Forecast 2025~2034", <https://www.thebusinessresearchcompany.com/report/aquafeed-global-market-report> 참조

3) Grand Riew Research, South Korea Aquafeed Market Size & Outlook, 2022-2030, https://www.grandviewresearch.com/horizon/outlook/aquafeed-market/south-korea?utm_source=chatgpt.com 참조

연평균 성장률은 4.5%로, 세계 시장 성장률(7~9%)보다는 낮으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양식업이 해조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어류·패류 양식으로 다변화하고 있어 안정적·위생적 사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수산자원 고갈, 수산물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수산물 공급량 중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약 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에 따라 수산사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수산양식 산업은 사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어분과 대두박과 같은 주요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⁵⁾ 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외 공급망 불안정 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⁶⁾

- 한편, 아직까지 국내 양식어가에서는 생사료 사용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생사료는 잡어, 어류 부산물, 패류나 연체류 등 자연 상태

4) 해양수산부, 「제5차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4-’28)」, 2023.11.

5) **어분(fish meal)**은 어류를 원료로 가열·압착·건조·분쇄하여 만든 고단백 분말 사료 원료로, 주로 멸치, 정어리, 청어, 오징어 부산물 등이 사용됨. 소화율과 성장 효과가 뛰어나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하고 남획·환경 파괴 우려가 있어 지속가능성 우려가 있음. **대두박(soybean meal)**은 콩에서 기름을 짜낸 후 남은 박을 건조·분쇄한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대부분 수입산이라 국제 곡물가격 및 기후변화 영향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가짐.

6)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양식산업 동향과 전망」, 2022.

의 수산물을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냉동한 뒤 사용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방식임.

생사료 사용은 수질오염, 잔반 발생, 질병 확산 등 환경적·위생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배합사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나,

생사료가 배합사료보다 구입 단가가 낮고 별도의 보관시설 등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배합사료로의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환경규제·지속가능성·양식업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수산사료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수산사료 산업은 원료 수입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와 생사료 사용 관행이라는 환경적·위생적 한계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며,

수산물 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그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와 환경적·위생적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사료의 배합사료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수산사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 현재 수산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에 포함되어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⁷⁾ 현행법은 축산 동물을 주요 규율대상으로 하고, 주로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등을 위한 규제 중심의 입법체계로,

수산동물용 사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사료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제정안은 수산사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산 사료의 생산·공급을 보장하고 산업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은 이를 위해 수산사료산업의 기반조성(안 제2장), 수산사료의 제조·수입·판매(안 제3장) 및 수산사료의 검사(안 제4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 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단미사료(單味飼料)란 하나의 원료 그대로 쓰이는 사료 성분으로, 단독보다 배합사료의 원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배합사료(配合飼料)는 단미사료 여러 가지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만든 완제품 사료이며, 보조사료(補助飼料)는 사료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동물의 건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물질임

[표] 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수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수산사료 품질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제2조(정의)	수산동물, 수산사료, 수산사료산업 등 용어 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자료 수급조절 및 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사료에 관하여 이 법이 일반법
	제5조(적용 배제)	수출용 수산사료에 대한 법 적용 배제
제2장 수산사료 산업의 기반조성 등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 관리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작성·관리
	제8조(수산사료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능
	제9조(수산사료관련단체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관련단체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지원 가능
제3장 수산사료의 제조·수입· 판매 등	제10조(제조업의 등록)	제조업은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제조시설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신고
	제11조(제조업 등록의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조업 등록 제한
	제12조(제조업의 승계)	양도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
	제13조(수산사료의 수입신고 등)	특정 수산사료의 수입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제14조(수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수입 수산사료의 용도 외 판매 금지

구 분		제 정 안
	제15조(수산사료의 공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수산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 可
	제16조(수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수산사료 종류·성분·성분량 등의 등록
	제17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 이상 함유된 수산사료 등은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제18조(수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유지 등을 위해 수산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 가능
	제19조(수산사료의 표시사항)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수산사료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 사항,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
	제20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제21조(과징금처분)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제4장 수산사료의 검사 등	제22조(자가품질검사)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산사료가 수산사료 공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 검사
	제23조(수산사료 시험검사 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가능
	제24조(수산사료시험검사 기관 지정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 가능
	제25조(수산사료검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수산사료검사 실시 가능
	제26조(수산사료검정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 검정기관 지정 가능
	제27조(수산사료 재검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검사 결과 폐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검사 결과 통보

구 분		제 정 안
	제28조(폐기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나거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경우 등에는 판매 금지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제29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실 공표 가능
	제30조(수산동물사육시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동물사육시험을 실시하고, 결과 공개 가능
	제3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
제5장 보 칩	제32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 등 가능
	제33조(수수료 등)	제조업 등록, 성분 등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 지정 및 심사 시에는 수수료 납부
	제34조(증표의 제시)	검사·검정·폐기 등 조치를 하는 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제35조(청문)	제조업 등록 취소 및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제36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지자체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위임 가능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등은 형법상 공무원의 뇌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제6장 벌 칩	제38조(벌 칩)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등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벌 칩)	무등록 제조업 영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등의 법 위반 시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 과금
	제41조(과태료)	제조업 승계에 대한 시·도지사 신고 누락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 음영표시는 현행 「사료관리법」에 규정되지 않은 신설 조문(안 제3·4·6·7·30조)

2. 제정안 심사 시 고려 사항

- 제정안은 수산사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총 6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음. 그러나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제4조·제6조·제7조·제30조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조문은 현행 「사료관리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⁸⁾

기존 법률의 개정·보완을 통해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 작아질 수 있는바, 이미 「사료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수산사료에 대해 상당한 수의 유사 규정을 별도 법률로 중복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검사·검정·시험 등 「사료관리법」상 제도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률 규정을 포함한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8) 참고로, 현 「사료관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는 조문은 총 5개로,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7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제18조(사료공정서의 작성·보급)임.

- 한편, 제정안은 수산사료의 관리·지원 주체를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구조임. 이에 따라 부처 간 권한 조정 문제, 축산사료와 수산사료 간 통합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됨.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수산 사료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일관된 품질기준과 검사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으므로, 이를 분리할 경우 행정 중복, 관리 공백, 기준 불일치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정안에 대해서는 수산사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입법경제성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이하에서는 제정안이 현행 「사료관리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함.

IV.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1장 총칙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법 적용에서의 우선순위 등 총칙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제정안과 현행 사료관리법 조문 비교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수산사료</u> 의 생산과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수산사료를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u>수산업</u> 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사료</u> 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u>축산업</u> 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수산동물</u> ”이란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로서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u>수산사료</u> ”란 수산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수산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 2. “단미사료” 3. “배합사료” 4. “보조사료” 5. “제조업” 6. “수입업” 7. “제조업자” 8. “수입업자”. 9. “판매업자”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3. “<u>단미사료</u>”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수산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u>배합사료</u>”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5. “<u>보조사료</u>”란 수산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6. “<u>수산사료산업</u>”이란 수산사료를 연구·개발·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7. “<u>제조업</u>”이란 수산사료(혼합·배합·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8. “<u>수입업</u>”이란 수산사료를 수입하여 판매(단순히 재포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을 말한다. 9. “<u>수산사료사업자</u>”란 수산사료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수입업자”란 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12. “판매업자”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외의 자로서 수산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수산사료 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수산사료사업자는 친환경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사료를 연구개발·제조·수입·유통·판매하도록 힘써야 하며, 수산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수산사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제5조(적용 배제) <u>제조업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 지원)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③ <u>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u> 제4조(적용 배제) <u>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1장 총칙은 해당 법률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일반적인 입법례로 볼 수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문을 간결하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제정안 입법 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다만, 제정안은 “수산동물”, “수산사료”, “수산사료산업”, “수산사료사
업자” 등 수산분야에 특화된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수산사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과 동일하게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
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사료는 일반적으로 생사료와 배합사료로 구분되며, 특
히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생 문제 개선과 배합사료 전환
유도가 제정안의 주요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정의 규정부터 이
를 반영하여 생사료와 배합사료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생사료에 대한 규율 내용은 사회적 합
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재 제정안에는 생사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생사료 유통 및 사용실태 조사,
양식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규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법률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안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여 이 법을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사료관리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제정안의 필요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양식산업발전법」,⁹⁾ 「수산업법」,¹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¹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¹²⁾ 등 현재 수산 사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다수의 법률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9)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10)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12)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비료·사료·화장품·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정안 입법 시에는 그 목적과 수산사료에 관한 다른 법률과 관계를 고려하여 ‘수산사료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은 현행 「사료관리법」 제3조제2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¹³⁾ 이 경우 농림축산부장관이 수산사료를 포함한 전체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도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현행 개별 법률에서 「사료관리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¹⁴⁾ 제정안은 부칙 제6조에서 ‘중전의 「사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¹⁵⁾ 법률 해석·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두

13) 「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수출·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4)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별표 1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및 별표 2의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수입임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의 임업진흥사업계정에 전입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15) 안 부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수산사료에 관하여 중전의 「사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중전의

고 있으나,

제정안 입법 시에는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하여 해당 법률들의 개별 조문을 정비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사료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지 않고 단순히 ‘사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¹⁶⁾이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¹⁷⁾ 등 다수의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제정안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부칙에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을 두어 각 법률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입법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사료관리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의무자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 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2. 제2장 수산사료 산업의 기반조성 등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수산사료 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및 통계 작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제정안과 현행 사료관리법 조문 비교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u>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수산사료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u> <u>2. 수산사료산업의 현황과 전망</u> <u>3. 수산사료의 수급 계획</u> <u>4. 수산사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u> <u>5. 수산사료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u> <u>6. 수산사료의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u> <u>7. 수산사료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u> <u>9. 그 밖에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u>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사료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단체의 장 및 수산사료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제8조(수산물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물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 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9조(수산물관련단체의 지원)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수산물관련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27조의2(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하 생략)</u>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③ <u>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u> 제5조(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안 제2장 수산사료산업의 기반조성 등(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수산사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안 제6조와 수산사료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안 제7조는 현행법과 구분되는 제정안 고유의 규율사항임.

- 먼저 안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제정안은 수산사료산업을 연구개발·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6호), 해양수산부장관이 발전 목표와 정책방향, 산업 현황과 전망, 수급계획, 중장기 투자계획, 전문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 교육·이해 증진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

또한, 일반적인 산업진흥 관련 법률들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각 호의 사항들을 해당 법률의 별도 조문에서 구체화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수산사료 산업에 관한 사항과 수급계획 및 연구개발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 법안의 목

적에 명시된 수산사료 생산·공급의 안전성 및 수산사료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의 추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산업·연구개발·인력양성·교육·홍보 등의 정책 사안에 관한 별도 근거도 두지 않고 있음. 이 경우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정책 사안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산사료 산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사료투입현황’을 다루고 있는데,¹⁸⁾ 이와 별도로 수산사료산업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게는 중복 부담으로 작용하고, 정부 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존 조사와의 연계·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제3장 수산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등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제조업을 시·도지사 등록제로 하고, 수입업은 해양수산부장관 신고제로 하며, 용도 외 판매금지, 수산사료 성분등록, 수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수산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 제정안과 현행 사료관리법 조문 비교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제10조(제조업의 등록)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수산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u>농업활동, 양곡가공 또는 식품 제조를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부산물(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조업자(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의 폐업 사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0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3조(수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조업의 승계) ① 제조업자가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① 수입업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입업자는 <u>해양수산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u>수산사료</u>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수산사료의 안전성 확보·수급안정 등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수산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이나 제26조에 따른 <u>수산사료검정기관</u>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에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u>사료</u>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사료의 안전성 확보·수급안정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사료시험검사기관</u>(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14조(수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7조(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한 수산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수산동물 등의 먹	① 누구든지 수입한 사료를 다른 사료의 원료용 또는 동물등의 먹이, 그 밖의 <u>농림</u>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이, 그 밖의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해양수산물부장관</u>은 수입한 수산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산사료의 공정 등) ① <u>해양수산물부장관</u>은 수산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수산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수산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u>해양수산물부장관</u>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수산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내용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산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한다. 제16조(수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수산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u>해양수산물부장관</u>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	<u>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수입한 사료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수산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산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수산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성분등록한 수산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7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수산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에 해로운 유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사료(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등록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성분등록한 사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유해물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수산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u>수산동물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수산동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u>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산동물 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수산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수산동물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및 불법어획물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u> ② 누구든지 수산동물에게 제1항제7호의 수산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	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u>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u>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u>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u>해양수산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수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① <u>해양수산부장관</u>은 수산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산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수산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수산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수산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u>수산사료</u>와 그 제한기준은 <u>해양수산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수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u>사료</u>와 그 제한기준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유통기한,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5. 제11조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수입한 경우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한 경우 8.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0.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수산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1.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	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營業을 한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의2.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u>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u>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u>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u>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0.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량 제한을 위반한 자 12.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질·수산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한 경우 14.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5.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16. 제22조제4항에 따라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8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17. 제20조제4항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26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 제3장의 12개 조문은 현행 「사료관리법」과 조문의 배열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수산사료에 특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별도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현행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제정안에 대해 동일한 원료·제조시설·취급자에 대해 성분등록, 제조업등록, 검사(검역 및 안전성, 자가품질) 등의 규제가 중복

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사료업체의 행정부담 증가 및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전달되고 있으므로,¹⁹⁾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여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한국사료협회,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2025.8.

4. 제4장 수산사료의 검사 등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규정하려는 제조업자등의 자가품질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의 수산사료검사 및 재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 제정안과 현행 사료관리법 조문 비교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제22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수산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u>수산사료</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추 수 있다. 1. 수산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은 제2항에 따	제20조(자가품질검사)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u>사료</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추 수 있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u>사료시험검사기관</u>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③ <u>사료시험검사기관</u>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u>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u>수산사료검정증명서</u>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23조(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①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수산사료</u>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u>해양수산부장관</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을 지정한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u>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은 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u>사료검정증명서</u>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u>사료시험검사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u>사료시험검사기관</u>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u>사료</u>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u>사료시험검사기관</u>을 지정한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u>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u>사료시험검사기관</u>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u>사료시험검사기관</u>은 지정의 유효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u>사료시험검사기관</u>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24조(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① <u>해양수산부장관</u>은 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u>수산사료검정증명서</u>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수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u>사료검정증명서</u>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u>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u>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u>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을 취소한 경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u>해양수산부</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25조(수산사료검사) ①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산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산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u>해양수산부장관이</u> 지정하는 자(이하 “<u>수산사료검사원</u>”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수산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산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한다. 제26조(수산사료검정기관) ①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5조에 따라 수거한 수산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우에는 그 사실을 <u>농림축산식품부</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21조(사료검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지정하는 자(이하 “<u>사료검사원</u>”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료검사원의 자격·직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u>수산물사료검정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산물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수산물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유해독소와 수산물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u>수산물사료검정기관</u>의 지정방법 및 <u>수산물사료</u>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한다. ③ <u>해양수산물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수산물사료검정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u>사료검정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u>사료검정기관</u>의 지정방법 및 <u>사료</u>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한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사료검정기관</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수산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제27조(수산사료 재검사) ① <u>해양수산부 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u>수산사료검사</u> 결과 해당 <u>수산사료</u>가 <u>수산사료공정</u>에 위반되거나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 장관</u>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u>수산사료</u>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6조에 따른 <u>수산사료검정기관</u>에 재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제23조(사료의 재검사)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u>사료검사</u> 결과 해당 <u>사료</u>가 <u>사료공정</u>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u>사료</u>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u>사료검정기관</u>에 재검정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제28조(폐기 등의 조치)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u>수산물사료검사</u> 결과 또는 제27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u>수산물사료</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u>수산물사료</u>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u>수산물사료</u>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u>수산물사료</u>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수산물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산물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u>수산물사료</u>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u>수산물사료</u>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	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u>사료검사</u>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u>사료</u>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u>사료</u>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u>사료</u>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u>사료</u>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u>사료</u>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u>사료</u>의 회수 또는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산동물사육시험)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수산사료를 활용한 수산동물 사육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사육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u> ② <u>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사육시험의 시험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3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수산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수산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u> ② <u>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산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u>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u>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③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u>수산사료공장</u>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사료공장</u>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사료공장</u>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u>해양수산부장관</u>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사료공장</u>으로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u>해양수산부장관</u>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사료공장</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u>사료공장</u>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⑥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물사료공장</u>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u>수산물사료공장</u>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u>해양수산물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물사료</u> 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 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물사</u> <u>료공장</u>은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수산물사료공장</u>의 지정요건 및 지 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u>아니한 경우</u> 4. 제25조제1항제8호·제9호·제12호부 터 제14호까지의 규정·제16호·제18 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 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 는 경우 ⑧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⑨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 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u> 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u> <u>장</u>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물령</u> 으로 정한다.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은 수산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 해당 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산사료검사, 그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검정하기 위한 수산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료업계에 따르면, 법 분리운영 시 전체 사료검사의 약 5%에 해당하는 사료검사(연 2억원 수준)를 위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사장비를 별도 구매하고 검정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바,²⁰⁾ 사료검정 기반여건 미비로 인한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현행법과의 관계를 정리하여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고, 검정 기반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 업계에 따르면, 배합사료 생산량(2,400만톤)에서 양어사료(16만톤)가 차지하는 비중은 0.7% 정도이고, 전체 사료검사(12만건) 중에서는 5%(6천건) 이내이며,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280여개에 달하는 검정항목을 위한 검정장비는 80여종 4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사료협회,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2025.8.

□ 다음으로 안 제30조는 현행법에는 없는 규정으로, 국내 수산사료를 활용한 수산동물 사육시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성분 분석만으로는 수산사료의 실제 성능을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육시험을 통해 사료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산사료의 품질 향상과 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해됨.

다만, 수산동물 사육시험은 장기간의 시험 기간과 전문 시설·인력이 요구되어 상당한 재정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며, 어종·사육환경에 따라 시험 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워 실제 현장 적용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사업과의 연계·조정 및 비용부담 구조의 명확화 등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

- 제정안은 수산사료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제조업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 검정·검사·폐기 등 조치 시 증표 제시 등 절차적·기술적인 사항과(안 제5장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정안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에 대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형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장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 제정안의 규정 내용은 현행 「사료관리법」과 동일한 것으로, 별도 법률 제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필요한 규정들로 보여짐.

【 제정안과 현행 사료관리법 조문 비교 】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제5장 보칙 제32조(감독) ①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u>수산사료</u> 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 또는 <u>수산사료검정</u>	제27조(감독)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u>사료</u> 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u>사료시험검사기관</u> 또는 <u>사료검정기관</u> 의 사무소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u>기관</u>의 사무소·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수산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제7호의 <u>수산사료</u>를 수산동물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u>어가</u>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u>수산사료검정기관</u>·<u>어가</u> 등에 대하여 시설·기계 및 장비의 개선·보완, 그 밖의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해양수산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3. 제31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4.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5. 제31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u>사료</u>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u>농가</u>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u>사료시험검사기관</u>·<u>사료검정기관</u>·<u>농가</u> 등에 대하여 시설·기계 및 장비의 개선·보완, 그 밖의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 3.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 4.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 5.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자는 <u>해양수산물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u>수산사료</u>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u>수산사료</u>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u>수산사료</u>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제34조(증표의 제시) 제13조제2항·제25조제2항·제28조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청문)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u>해양수산부장관</u>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u>해양수산부장관</u>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u>해양수산부장관</u>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수산사료</u> 관련 법인 또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u>사료</u>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라 <u>사료</u>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라 <u>사료</u>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 제29조(증표의 제시) 제19조제2항·제21조제2항·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청문)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u>사료시험검사기관</u>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제19조에 따른 <u>사료</u>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료</u>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u>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3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u>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6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u>수산사료검정기관</u>의 임직원,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u>수산사료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u>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u>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성분등록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u>사료시험검사기관</u>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u>사료검정기관</u>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u>사료관련 단체</u>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수산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를 사용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자 2.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수입한 자	로 등록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수산사료를 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사료 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분등록을 한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판매한 자
8. 제18조제2항에 따른 물질·수산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9.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산사료를 판매한 자	8의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10.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자	9.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1. 제2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0.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2.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자
13. 제28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14.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자
	13.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15.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

제 정 안	現 사 료 관 리 법
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u>수산사료검사를</u>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 <u>수산사료공장</u>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적용 <u>사료공장</u>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제2항에 따른 <u>사료검사</u>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수산사료 현황

□ 수산사료의 종류

○ 사료관리법에 따라 수산사료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
중양식용·관상용 수산동물에 급이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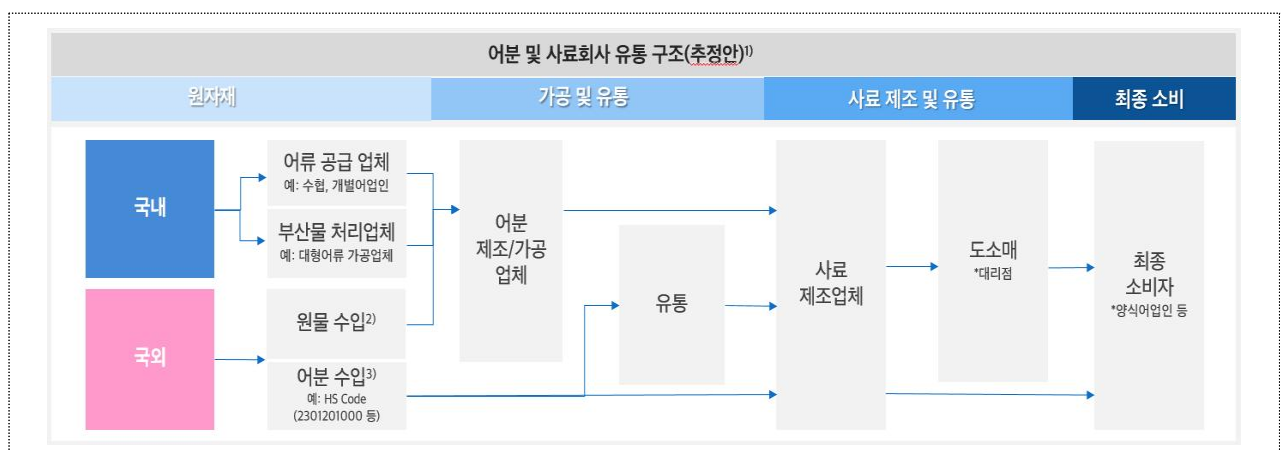
* 다만 현행법상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는 수산용을 별도 구분하지 않아, 해수
부는 수산용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인 **어분**과 수산용 **배합사료**를 중점적으
로 관리 중

** 어분 : 생선 전체 또는 일부를 증기로 찌고 압착하여 액즙을 제거하고, 고형부
분만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

< 수산사료의 종류 >

구분	주요 원료
단미사료	(동물성)어분, 어즙흡착, 육분(육골분), 유지 등 (식물성) 곡물 부산물, 식물성 박류, 식품가공 부산물 (광물성) 석회석, 미량광물질, 다량광물질
보조사료	생균제, 향미제, 산미제, 비타민제
배합사료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

< 어분 및 수산용 배합사료의 유통구조 >



□ 어분 현황

- (국내 생산량) '2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생산량은 약 17천 톤 유지
- (수출입량) 어분의 5개년('19~'23년) 평균 수출량은 55천 톤, 수입량은 66천 톤 수준이며, 주요 수입국은 칠레, 베트남, 페루 등

□ 수산용 배합사료 현황

- (국내 생산량) '23년 기준 국내 배합사료 생산량은 158천 톤 수준

< 수산용 배합사료 생산량 >

(단위: 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136,910	148,201	155,897	163,354	168,059	183,956	180,390	158,193
해산어	97,737 (71.4%)	98,207 (66.3%)	104,789 (67.2)	113,719 (69.6%)	108,058 (64.3%)	121,287 (65.9%)	123,201 (68.3%)	110,182 (69.7%)
넙치	22,381 (22.9%)	22,663 (23.1%)	23,841 (22.8%)	21,674 (19.1%)	20,563 (19.0%)	25,064 (20.7%)	22,436 (18.2%)	22,272 (20.2%)
조피볼락	9,531 (9.8%)	10,539 (10.7%)	12,441 (11.9%)	12,192 (10.7%)	9,021 (8.3%)	9,585 (7.9%)	10,654 (8.6%)	9,342 (8.5%)
돔류	9,160 (9.4%)	9,811 (10.0%)	9,556 (9.1%)	10,615 (9.3%)	12,454 (11.5%)	12,789 (10.5%)	13,170 (10.7%)	10,938 (9.9%)
담수어	39,173 (28.6%)	49,994 (33.7%)	51,108 (32.8%)	49,636 (30.4%)	60,001 (35.7%)	62,669 (34.1%)	57,188 (31.7%)	48,010 (30.3%)
민물장어	18,456 (47.1%)	28,899 (57.8%)	29,697 (58.1%)	24,623 (49.6%)	37,452 (62.4%)	41,251 (65.8%)	35,342 (61.8%)	28,543 (59.4%)
메기	12,053 (30.8%)	10,865 (21.7%)	10,683 (20.9%)	13,181 (26.6%)	11,513 (19.2%)	10,225 (16.3%)	10,253 (17.9%)	10,039 (20.9%)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수입량) '15년부터 '23년까지 평균 8.1천 톤을 수입하였으며, 수입량은 지속해서 감소 중('15년 12천 톤 → '23년 3천 톤)
- (사용량) '16년 이후 생사료 대비 사용량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수산용 배합사료 및 생사료 사용량 >

(단위: 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639,342	653,687	680,125	677,163	651,258	649,349	641,104	639,313
배합사료 (수입량 포함)	148,316 (23.2%)	158,303 (24.2%)	165,391 (24.3%)	172,177 (25.4%)	174,286 (26.8%)	190,032 (29.3%)	185,081 (28.9%)	177,511 (27.8%)
생사료	491,026 (76.8%)	494,384 (75.8%)	514,734 (75.7%)	504,986 (74.6%)	476,972 (73.2%)	459,317 (70.7%)	456,023 (71.1%)	461,802 (72.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참고 2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 현황

□ 국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 현황(24년기준)

	업체명	위치	생산 품목(어종)
1	CJ 피드엔케어	인천, 군산	해산어, 담수어
2	우성사료	충남 논산	해산어, 담수어
3	천하제일(하림계열)	경남 함안	해산어, 담수어
4	수협사료	경남 의령	해산어, 담수어
5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	넙치
6	코팩스(뱀장어 1위)	전남 나주	넙치, 뱀장어
7	사조동아원	충북 당진	해산어, 담수어
8	대봉LF	제주	넙치, 뱀장어
9	대한사료	인천	해산어, 담수어
10	경원사료	충북 당진	해산어, 담수어
11	오뚜기	경남 거제	해산어, 담수어
12	신안우력(주)	전남 신안	조피볼락
13	GP Feed	충남 태안	해산어, 담수어
14	유안사료(주)	전남 화순	뱀장어
15	고려특수사료	정북 정읍	해산어, 담수어
16	고려사료	전남 영광	뱀장어
17	에이티면역	충북 청주	해산어
18	(주)프라임오앤에프	경남 밀양	뱀장어
19	세화사료	서울	담수어